

□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(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)

1. 약국, 병,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
2. 게임장, 문구점,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
- 다만, 슈퍼마켓,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 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
3.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
4.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

1.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
2. 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

□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
(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참조)

1.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1호 참조
2. 한국표준산업분류포에 의한 종합소매업종 슈퍼마켓, 편의점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

□ 신청인 중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 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, 그 우선 지정대상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.

-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 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.

-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, 장애인 등록 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 끝.